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6. 8. 개정 판 (시행 2020. 3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14/compare?from=976&to=1304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3:19:0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연구처장, 사무처장, 원장 및 학술정보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	**제34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학술정보팀장(서기)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연구산학처장, 사무처장, 사무부처장, 교무부처장, 재무처장, 학생복지팀장, 예산팀장, 기획평가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〈개정 2022-03-07〉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제36조(위원회 직능) ①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	**제36조(위원회 직능)** ① 도서관 운영의 기본 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도서 예산 집행 심의 ③ 도서관에서 계획하는 특정사업 ④ 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⑤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〈전면개정 2022-03-07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는 학술정보팀장(서기)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연구산학처장, 사무처장, 사무부처장, 교무부처장, 재무처장, 학생복지팀장, 예산팀장, 기획평가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6조(위원회 직능) ① 도서관 운영의 기본 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
② 도서 예산 집행 심의
③ 도서관에서 계획하는 특정사업
④ 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⑤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